

의안번호	2212521
의 퇴 인	김미애 의원
회 답 일	2026. 1. 21.
추계번호	25A47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9조제11호 (기금의 사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제72조의3에 따른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기금의 사용 범위에 제72조의3에 따른 사업 추가	의무규정
	안 제72조의3 신설 (전주의 철거 등)	전기사업자는 제72조의2²⁾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주(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 포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 철거하거나 지중이설하여야 함(제1항) 1. 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전주 2.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되거나 전도 위험이 있는 전주 3. 보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전주 4.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전주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제3항)	

1) 정부조직 개편으로 동 법안의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관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의안 원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표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함

2) 안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보행안전 및 도시미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9조제11호 (기금의 사용) 안 제72조의3 신설 (전주의 철거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설치 후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거나 안전·도시 미관 측면에서 교체 필요성이 있는 전주 및 가공전선로¹⁾에 대해서는 그 철거 및 지중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 현행법 제72조의2에 따르면 ^①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②공익 목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③국민안전과 관련된 경우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²⁾에 대한 소요비용의 20%를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으로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80% 중 30%는 지방자치단체가, 50%는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에서 부담하였음³⁾

1) 개정안은 노후 '전주'에 대한 철거 및 지중이설 규정이나, 전주는 지지물로서 전주만을 철거하거나 지중이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하므로(2026.1.15. 기후에너지환경부 답변자료), 해당 규정이 '가공전선로'의 철거 및 지중이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검토함

2) 전선로지중화사업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 5154-301)

3)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3조(사업비 부담기준)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다음의 각항에 따라 부담한다.

1.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공용설치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이 중 안전 등을 위하여 교체 필요성이 있는 전주 및 가공전선로 (이하 “노후전주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 개정안에 따른 경우 노후전주등의 지중이설 사업 중 한국전력공사 등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총 소요 비용의 50%)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후전주등의 지중이설을 위해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감소하고, 국가의 재정지출은 증가함
 - 또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되므로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 비용⁴⁾을 차감한 추가재정소요는 총 소요 비용의 50%(사업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임
 - 기존 비용 분담: 국가 20%(A), 지방자치단체 30%(B), 한전·통신사 50%
 - 개정안 비용 분담: 국가 100%(C)
 - 추가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른 비용(C) - 기존 비용(A+B)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노후전주등의 선로길이에 사업비 단가를 곱하여 추정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노후전주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알 수 없고 선로길이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 그동안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의 예산 편성은 사업 대상 선로 길이에 사업비 단가를 곱하여 반영됨⁵⁾

3. 법 제72조의2 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 관련 지중이설 사업에 한해 총 소요비용의 20%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중이설사업이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 비용은 원인유발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액 부담한다.

4) 해당 규정은 당초 5년 한시 지원으로 도입되었으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5.11.24.)에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국비 지원 규정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기존 소요 비용을 산출할 때 이를 반영함

* 다만, 아직 본회의 의결되지 않음(2026.1.16. 기준)

5)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 예산 편성 내역(다음 페이지)

- 해당 편성 방식을 준용하여 노후전주등에 대한 지중이설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안 제72조의3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주 및 전선로에 대한 기준과 함께 노후전주등의 선로 길이, 연도별 사업비 할당 등을 가정하여야 함
- 다만, 노후전주등의 철거 및 지중이설에 필요한 사항이 행정규칙으로 위임되어 현 시점에서 사업 대상 산출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알 수 없으며, 선로 길이 등 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①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전주는 1만 4,393기(2025년 6월 기준), ②전주 내부진단 결과 ‘불량’으로 판정되어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된 전주는 846기(2024년 1~12월), ③보행 방해 및 도시 미관 저해로 조치 대상이 된 전주는 225기(2022년 1~12월)임

* [참고자료] 노후 전주 등 현황

- 이에 노후전주등의 철거 및 지중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2021	2022	2023	2024	2025
○ 지자체경상보조 (330-01) : 20,000백만원	○ 지자체경상보조 (330-01) : 52,480백만원	○ 지자체경상보조 (330-01) : 52,480백만원	○ 지자체경상보조 (330-01) : 41,984백만원	○ 지자체경상보조 (330-01) : 23,072백만원
- 전선로지중화 40C-km×25억 (C-km당 단가) × 20%(보조율) = 20,000백만원	- 전선로지중화 160C-km×16.4억 (C-km당 단가) × 20%(보조율) = 52,480백만원	- 전선로지중화 131C-km×20억 (C-km당 단가) × 20%(보조율) = 52,480백만원	- 전선로지중화 104C-km×20억 (C-km당 단가) × 20%(보조율) = 41,984백만원	- 전선로지중화 46C-km×25억 (C-km당 단가) × 20%(보조율) = 23,072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노후 전주 등 현황

① 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전주

- 제작 후 30년 경과된 전주는 **14,393대**이며, 전체 대비 0.2% 점유

(단위: 기)

본부명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 30년 이하	30년 초과	미상 ¹⁾	합계
서울	9,622	12,312	9,741	510	45,875	78,060
남서울	9,251	12,130	11,954	730	46,536	80,601
인천	65,580	70,485	36,385	1,447	96,672	270,569
경기북부	149,765	144,562	41,280	296	186,739	522,642
경기	217,560	217,300	50,876	940	290,643	777,319
강원	216,448	190,073	51,048	1,288	223,270	682,127
충북	195,739	155,673	32,320	1,353	215,661	600,746
대전세종충남	352,887	309,488	81,570	838	453,720	1,198,503
전북	298,392	231,341	70,470	206	281,195	881,604
광주전남	456,218	426,693	96,084	1,161	430,909	1,411,065
대구	252,533	210,135	48,292	938	276,890	788,788
경북	253,998	200,741	42,944	394	255,717	753,794
부산울산	74,712	94,980	31,628	141	116,993	318,454
경남	227,499	248,299	62,695	2,311	229,321	770,125
제주	42,018	41,087	22,277	1,840	65,549	172,771
합계	2,822,222 (30.3%)	2,565,299 (27.6%)	689,564 (7.4%)	14,393 (0.2%)	3,215,690 (34.6%)	9,307,168 (100.0%)

주: 1) 한전 영업배전시스템(NDIS) 도입 이전(`03년도) 제작된 전주로 정확한 제작년도 알 수 없으나 최소 22년 이상 경과 추정

1. 2025.6.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②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되거나 전도 위험이 있는 전주

- 한전은 콘크리트 전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주 내부철근의 파단여부에 대해서 비파괴 검사(이하. 전주 내부진단)를 시행 중이며, 전주 내부진단 결과, 총 16개 철근 중 1개 철근이라도 파단이 확인되면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를 우려하여 전주교체 시행
- 2024년도 기준, 내부진단 결과 “불량판정(철근파단)”을 받은 전주는 846기 (2025년 실적은 집계중)

(단위: 기)

본부명	전주 내부진단 결과 ‘불량’ 판정 물량
서울	21
남서울	20
인천	97
경기북부	43
경기	82
강원	76
충북	52
대전세종충남	128
전북	26
광주전남	45
대구	130
경북	16
부산울산	96
경남	14
제주	—
합 계	846

주: 1. 2024.1 ~ 12,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③ 보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전주

○ 2022년 보행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주는 225기

(단위: 기)

본부명	위해 설비	현장시공 완료	
		현장시공 완료	현장시공 미완료 ¹⁾
서울	23	14	9
남서울	16	12	4
인천	15	7	8
경기북부	3	3	—
경기	15	11	4
강원	6	5	1
충북	8	6	2
대전세종충남	15	15	—
전북	11	11	—
광주전남	8	6	2
대구	44	44	—
경북	35	35	—
부산울산	15	15	—
경남	4	1	3
제주	7	7	—
합 계	225	192	33

주: 1) 미이설 전주 33기는 지중화 예정지역, 휴전협약 불가, 이설위치 협의불가 등의 사유로 미완료

1. 2022.1 ~ 12,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